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. 8. 25 선고 2020가단1495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

담당변호사 안정현

변론 종결 2020. 8. 11

판결 선고 2020. 8. 2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당진시 C 임야 11167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⑥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약 38㎡, 같은도면 표시 ①, ②, ③,④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㎡ 2의 각 지상건물,같은 도면 표시 ①,②,③,④, ⑤,⑥,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65㎡ 지상 콘크리트구조물을 각 철거하여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2013. 8. 17.부터 위 각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1내지 4호증 및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임야와 이에 인접한 같은 D 대648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는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71. 3. 15.경,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95. 9. 28.경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, ② 피고는 1995. 12. 6.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9㎡(별지 도면 부분에 해당함. 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와 창고(별지 도면 나 및 부분에 해당함. 이하 '이 사건 창고'라 한다)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2007. 3. 21.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, ③ 피고는 2004. 4. 19.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, 그 후 순차적으로 F, G이 각 1/2지분의 비율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위 임야 전부를 매수하여 2013. 10. 1.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별지 도면 n 및 Li 부분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,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04. 4. 19. E에게 매도하여 위 임야와 그 지상의 주택 중 별지 도면 n 부분과 창고 중 같은 도면(부분에 해당하는 주택과 창고가 그 대지인 임야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고 그 점유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별지 도면 가 부분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영상에 변론

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별지 도면 가 부분은 피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이고 그 현황도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안동철